

공 고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8-340호

**반포아파트지구(3주구)내 신반포21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
변경(안) 공람 공고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419호(2004.12.27)로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(3주구)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(안)을 주민에게 공람합니다.

본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및 잠원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02월 22일

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
1.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(안)

가. 신반포21차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(안)

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9-10번지 외 3필지
- 2) 면 적 : 8,785.9㎡
- 3) 변경내용 : 신반포21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
 -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공공기여율 변경 (0%→3%)
 - 소형임대주택 건설 및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변경 (230%이하→299.7%이하)
 - 건폐율 변경 (20%이하→50%이하)

2. 공람장소 :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및 잠원동 주민센터

3. 공람기간 : 2018.02.22. ~ 2018.03.26.

4. 관계도면 :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

- 공람장소인 서초구청 주거개선과, 잠원동 주민센터에 비치

공 고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8-343호

대부(중개)업체 소재확인 공고

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(중개)업체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『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대부업법”이라 한다.) 제13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20일
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
1. 공고의 명칭 : 대부(중개)업체 소재확인 공고
2. 공 고 기 간 : 2018. 02. 20. ~ 2018. 03. 22. (30일간)
3. 소재확인 대상업체 내역

연번	등록번호	상호명	대표자	소재지	비고
1	2016-서울서초-0173 (대부업) 2016-서울서초-0174 (대부중개업)	편딩샵소셜 대부	김용경	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로7길 8, 306호 (우면동)	
2	2017-서울서초-0072 (대부업) 2017-서울서초-0073 (대부중개업)	(주)그린편딩 대부	이창훈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3, 205호(서초동, 창원빌딩)	

4. 공고내용

- 해당대부업자는 공고기간만료 전까지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소재확인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 -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의거 등록이 취소되며,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됩니다.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담당(☎02-2155-875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